



외국인교원 인사 규정

규정번호	2-3-6
제정일자	2001. 3. 1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외국인교원의 인사관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2019.11.14.개정>

제2조 (적용범위) 본 대학 외국인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 (교원의 구분) 외국인교원의 직위는 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강사로 한다.

제 2 장 자격

제4조 (자격) ① 외국인교원의 임용 자격은 국내외 대학, 연구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본 대학의 초빙 목적에 부합 하는 업적을 갖춘 석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외국인교원의 임용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14년 이상인 자
2. 부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
3. 조교수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
4. 강사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<2019.11.14.개정>

제 3 장 임용 및 승진

제5조 (임용절차) ① 외국인교원은 해당 학과장이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사무국장에게 충원을 요청하고, 총장의 승인을 얻어 모집 선발한다. <2021.8.20. 개정> <2023. 3. 30. 개정><2024.3.20. 개정>

② 외국인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계약 임용한다. <2009.7.6 개정>

제6조 (임용시기 및 기간) ① 외국인교원은 매 학기초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외국인교원의 임용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고, 필요에 따라 2년 이내로 재임용한다.

③ 외국인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그 기간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.

④ 외국인교원의 재임용 기준은 외국인교원 재계약[학과]평가표, 강의설문 평가표, 외국인교원 재계약 평가표에 의하여 총점 100점 만점에 평점 80점 이상인 교원을 재임용 대상으로 한다.
<2021.8.20.,2021.12.23 개정>

제7조 (경력 년수 계산) 외국인 교원의 교육 및 연구 경력 년수 계산은 본 대학 교원인사 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 (구비서류) 외국인교원을 신규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.

1. 임용제청서 1부
2. 이력서 1부
3. 학력증명서 각 2부
4. 성적증명서 각 2부

5. 경력증명서	각 2부
6. 교원임용계약서	1부
7. 증명사진	2매
8. 외국인등록증 사본(여권 사본 포함)	1부

제9조 (승진) 외국인교원의 승진 임용은 제4조제2항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재임용 일에 한다.

<2019.11.14.개정>

제10조 (평가) 외국인교원을 승진 또는 재임용하는 때에는 임용기간중의 근무 태도와 교육 또는 연구업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승급 및 보수

제11조 (승급) 외국인교원의 승급은 승급기간을 충족하는 재임용 일에 한다.

제12조 (보수) 외국인교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최초 임용시 쌍방이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의한다.

제 5 장 복무 및 처우

제13조 (복무) 외국인교원의 복무에 대하여는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제14조 (처우) 외국인교원의 처우에 대하여는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.

제 6 장 신분보장

제15조 (당연 퇴직) 외국인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.

1.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만료일에 달한 때
2.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6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
3. 본 규정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기간 내에 재임용 되지 못하였을 때

<2019.11.14.개정>

제16조 (직권면직) 외국인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총장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.

1. 신체 또는 정신적 장해로 직무를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
2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평가 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
3. 교원관계 법령 및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
4. 인사기록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하였을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외국인 초빙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이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되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